

# 소 장

- 원 고 OO시민연대
 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OOO)
  대표 O O O
- 피 고 △△광역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####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 확인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 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○○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 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.
- 2.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사항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. 그러나 피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

- 3. 그러나 위 법률 제9조 제1항은 8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위 8가지 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위법하게 도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.
- 4.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### ○○행정법원 귀중

## 별 지 목 록



- 1. 1998, 1999년도 기지출된 판공비의 내역(일자 내역 액수 별로 정리)
- 2. 1998, 1999년도 기지출된 판공비의 지출결의서, 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
- 3. 2000년도 각 피고의 판공비 예산총액 및 기관별 총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법률상 처분의무있는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8조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, 38조)

- 1.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, 38조)

- 1.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. 다만, 당해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행정심판의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